

농지법 시행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안내

농지법 시행('73.1.1.)이전 형질변경 된 주택 및 창고 부지를 현실 지목에 맞게 지목변경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
새롭게 시작합니다

- ▶ 지적공부상 농지인 토지에 **주택, 창고** 등을 지어 장기간 사용 중이나, 농지법 시행('73. 1. 1.)으로 지목변경(전·답→대지)이 어려운 토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▶ 건축물대장 및 과세대장이 존재한 토지 지목변경 신청 안내
 - (소유자) 지목변경 신청서 제출 (분할측량 필요시 측량비 본인 부담)
 - (무안군) 지목변경 신청토지 현장조사,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

구체적으로 알아보게요

- ▶ **형질변경 된 토지란 무엇인가요?**
 - 토지의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으나, 현실적으로는 주거용이나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.
- ▶ **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?**
 - 현실에 맞게 토지의 사용 용도대로 지목변경(대, 창고용지)을 해 드립니다.
- ▶ **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**
 - 농지법 시행 이전 농지에 주택, 창고 등을 지어 생활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입니다.
- ▶ **어떻게 신청하나요?**
 - 해당 토지소유자가 **무안군청 민원지적과**에 방문하시어 지목변경 신청하면 됩니다.
- ▶ **언제까지 신청하나요?**
 - **2024년 12월 31일**까지 신청하면 됩니다.

※ **문의사항** 연락처 : 무안군청 **민원지적과** 지적팀 (☎061-450-5421~3)